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김원이·신영대·박지혜

김영진 • 허종식 • 김동아

김교흥 • 이재관 • 정준호

오세희 • 허성무 • 김정호

장철민 · 정진욱 · 김한규

곽상언 • 권향엽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 러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·설 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, 수탁 · 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

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11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8조의11(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)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.
 - 1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
 - 2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
 - 3.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8조의11(기술자료 유용행위에
	대한 금지청구권 등) ① 수탁
	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
	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
	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
	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
	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
	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
	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
	께 청구할 수 있다.
	1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
	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
	2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
	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
	3.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
	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
	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